

부산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4997 판결 [부당이득금등 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499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4 선고 2023가소91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4. 선고 2023가소9124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자녀로서 D는 2017년 12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6. 23. E과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3,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 시에, 잔금 110,000,000원은 2021. 7.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E에게 2021. 6. 22. 3,000,000원, 2021. 6. 23. 1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21. 7. 13. 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21. 7. 24. 매도인 E과 잔금지급시기만 2021. 8. 5.로 변경하여 망인과 체결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망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13,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2021.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3,000,000원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돈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매도인 임종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망인의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계기는 망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D와 동거하던 부산 사하구 F아파트 H호가 2020. 2.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② D는 2021. 6. 22. 망인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다음 날 망인이 10,000,000원을 매도인 E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금을 D가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14455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D가 원고에게 제기한 위 55,000,000원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D가 패소하였고 위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55,000,000원은 망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건은 '55,000,000원이 망인의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도 없지만, D의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55,000,000원이 망인의 돈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박우종

판사이광영